



Q1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생활지원) 제외대상이 있나요?

A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 비용 지원에서 제외하며,
- 해당 기관의 직원(공무직 포함)들도 생활지원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해당 기관의 직원이 가구구성원에 속한 경우도 지원제외

Q2 지원제외 기관의 직원 중 예외적으로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2 본인 또는 가족(국가·공공기관 정규직 제외)이 감염병과 관련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속된 기관의 지원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등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20. 4. 1. 이후 해외입국자인데 생활지원(유급 휴가비용·생활지원비)이 가능한가요?

A3 정부는 해외 각국의 코로나19 확산과 해외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4.1.부터 전 세계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를 실시(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축소에 따라 4.1. 이후 입국자는 생활 지원(유급휴가비용·생활지원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로 격리된 분들을 위해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 유급휴가비용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서비스 안내·신청·상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생활지원비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서비스 안내·신청·상담: 읍·면·동 주민센터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이 점이 궁금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이 있나요?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얼마나 지원되나요?

주민등록표상 격리시작 당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1개월분) 지급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금액(원)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언제 신청하나요?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별도 공지시까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③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지원제외 대상이 있나요?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중복지원 제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얼마나 지원되나요?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일 최대 13만원)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언제 신청하나요?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별도 공지시까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④ 재직증명서
-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⑥ 사업주등록증
- ⑦ 통장사본 등

근로자인 격리자는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Q4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4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과 관련 절차(입원치료·격리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격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이 법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Q5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

A5 생활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Q6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중 제외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A6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Q7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할 수 있나요?

A7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할 수 있습니다.